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1. 송아량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안 자 : 송아량 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1296호

다. 제출일자 : 2020. 2. 5.

라. 회부일자 : 2020. 2. 12.

2. 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안 자 : 이준형 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1297호

다. 제출일자 : 2020. 02. 05.

라. 회부일자 : 2020. 02. 12.

II. 제안사유

1. 송아량 의원 대표발의안

- 공공자전거 이용자에 의한 도난·분실·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자전거 이용안전 및 효율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안

-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시민의 확대와 이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와 교육대상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대책을 도모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송아량 의원 대표발의안

- 가. 공공자전거 이용자 귀책의 도난·분실·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조항을 명시함(안 제12조2 제4항)

2. 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안

- 가. 자전거 안전교육의 실시를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안 제13조제1항)
- 나.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아, 학생, 성인,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IV. 참고사항

1. 송아량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2. 17 ~ 2020. 2. 24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원안가결

○ 교통사고 등에 의해 파손된 자전거 등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변상 받아 세입 조치하고 있음

○ 경찰에 도난 신고하여 회수된 자전거 중 파손된 자전거에 대해 피의자에게 배상금 징수하여 세입 조치하고 있으나 조례상 근거 미비

○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인의식 제고를 위해, 공공자전거 도난·분실·파손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 할 수 있도록 조례상 손해배상 요구 근거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2 . 17. ~ 2020. 2. 24.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 원안동의
- 우리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자전거 타기 교육 등)을 근거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음
- 본 조례개정안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임
- 동 조례에 안전교육 및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사업수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하는 취지인바 원안에 동의함

V. 검토의견

1. 송아량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 이용자로 인한 공공자전거 또는 관련 시설물의 도난, 분실, 파손이 발생할 경우 시장이 해당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2015년 도입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지속적인 양적확대와 홍보에 힘입어 해마다 이용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비례하여 자전거 도난·분실·파손과 같은 문제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연도별 따릉이 구축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9월)
자전거(누적)	2,000대	5,600대	20,000대	20,000대	<u>25,000대</u>
대여소(누적)	150개소	450개소	1,290개소	1,540개소	<u>1,540개소</u>

- 서울시설공단 자료¹⁾에 따르면 2019년 따릉이 분실 건수 총 1,060건 중 회수되지 못하여 최종 분실 처리된 따릉이는 총 32건으로 '17년 1건, '18년 2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 따릉이 분실 및 회수 세부현황('19년)

구 분	총 발생건수	회 수	미 회 수	회 수 율
합 계	<u>1,060건</u>	1,028건	<u>32건</u>	97%

- 2016년 1건, 2017년 1건, 2018년 2건, 2019년 32건

따름이 도난사건(총 7건)으로 인한 도난 배상금은 3,354천원에 달하고 파손 배상금 또한 총 31대, 16,309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²⁾)

- 하지만, 피의자를 찾지 못한 도난 및 파손 건수가 더 많이 있음을 감안할 때, 따름이 도난·파손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추세로 봐야 할 것임
- 따라서, 현재 민법³⁾과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약관⁴⁾에 명시된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관련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2) - 도난 배상금 : 7건(3,354천원)

(2019.9월말 기준)

발생일자	장 소	내 용	보상요구액	보상액
합 계			3,354천원	3,354천원
2018. 11. 19.	SK망원동주유소 건너편	단말기 부분파손 1대	75천원	75천원
2019. 07. 02.	태릉 화랑지구대	단말기 2대	843천원	843천원
2019. 08. 02.	여의도 초교	단말기 1대	459천원	459천원
2019. 08. 05.	정릉교회	단말기 1대, 거치대 1대	100천원	100천원
2019. 08. 06.	1.당산동 SK 2.영등포삼환	자전거 부분파손 2대	459천원	459천원
2019. 09. 01.	상암월드컵파크 1단지	단말기 1대, 거치대 1대	642천원	642천원
2019. 09. 06.	마곡중학교 후문	자전거 및 단말기 1대	776천원	776천원

※ 도난 배상금 수령요건 : 경찰 신고 후 피의자가 확정되어 합의 과정에서 수령

- 파손 배상금 : 31대(16,309천원)

분실일자	장 소	내 용	조치사항
합 계		31대	16,309천원
2017. 1. 14.	서울시설공단 대여소	차량 대여소 총돌(9대)	4,776천원
2017. 1. 15.	휘봉고등학교 대여소	차량 대여소 총돌(9대)	4,776천원
2019. 4. 4.	국민일보 앞	차량 대여소 총돌(5대)	2,613천원
2019. 6. 4.	도산대로렉서스 앞	차량 대여소 총돌(3대)	1,483천원
2019. 11.13	롯데캐슬 115동 앞	차량 대여소 총돌(4대)	2,526천원
2019. 11. 15	화곡역 주변	차량 대여소 총돌(1대)	135천원

- 3)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 **서울 공공자전거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제12조 손해배상** ②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울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이와 함께,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따름이 절도 및 파손 등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예방교육 강화와 함께 도난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분실 따름이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전담인력 확대와 같은 다각적인 개선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민 증가와 이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대상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름이’를 포함한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예방과 자전거 이용자 전반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가 2015년에 도입한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자전거 이용관련 사고는 2016년도 23건에서 2019년도에는 385건으로 약 128배가 증가하는 등 자전거 이용사고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 및 사고발생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1~9월)
이용건수 (일평균)	1,611,631 (4,403)	5,031,039 (13,784)	10,061,684 (27,566)	14,176,699 (51,929)
사고건수 (월평균)	23건 (1.9건)	173건 (14.4건)	301건 (25.1건)	385건 (42.8건)

-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제4조제1항5)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시는 ‘2019년 자전거 안전문화교육 운영계획’⁶⁾을 통해 유아·학생·성인·어르신 등 대상별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운영을 통해 관련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조례개정을 통해 시장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유아, 학생, 장애인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서울시 정책을 반영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및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한 의미로 개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여 조례에 대한 일반 시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서울시 ‘2019년 자전거 안전문화교육 운영계획’(자전거정책과-1503): 시민 대상을 대상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문화 교육 등의 실시